

##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7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 효율 제고.

###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장 변경함(안 제13조, 별표)
  - 위원회 심의사항 중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위원장을 현실화함 : 거창군수 ⇒ 녹색환경과장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제28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 561호)」  
 II. 심의대상, VII.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완화함(안 별표)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9. ~ 9.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또는”을 “또는 별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를 “녹색환경과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p> <p>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u>군수가</u>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⑤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도로법」</p> <p><u>제10조</u>----- ----- -----</p> <p>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또는 별표에 따른</u> ----- -----</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녹색환경과장이</u> ----- ----- ----- ----- <u>사람</u> ----- -----</p> <p>⑤ (현행과 같음)</p>

[별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형질변경 사업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당 지역은 (1)의 형질변경 기준만 충족하여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심의 범위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의 표 II-3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구 분 \ 사업계획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의외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기 준	내 용
가.	▶ 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나.	▶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다.	▶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라.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마	▶ 경사 25퍼센트 이상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